

(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 )에서 5 ( )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_\_\_\_\_ 30 [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_\_\_\_\_ 30 [ ] 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주)
3. 판매 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3월 31일
6. 모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투자신탁운용(주) 본점 ☎ 02-768-6500 [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가  
「  
」

---

1.

2.

,

.

3.

,  
가

,

.

4.

.

5.

,  
(

,  
가

가

)

가

가

.

6.

,

가

.

7.

가

.

8.

가

가

.

## 1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2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3 .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4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 5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협회코드 : 95113)												
( )	A-1	C-1	C-2	C-3	C-4	C-i	C-e	C-P	C-w	C-y	S	S-p
	95114	95115	95116	95117	95118	15054	95119	AI194	19922	27383	AO981	AO982

2.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10

-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1)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사항 없음

6.

해당사항 없음

1.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협회코드 : 95113)												
( )	A-1	C-1	C-2	C-3	C-4	C-i	C-e	C-P	C-w	C-y	S	S-p
	95114	95115	95116	95117	95118	15054	95119	AI194	19922	27383	AO981	AO982

2.

2009. 6. 7	집합투자기구 최초 효력발생일
2009. 7. 8	집합투자기구 종류C-I 추가
2010. 2. 23	집합투자기구 종류C-w 추가
2010. 3. 5	투자대상 신용등급 상향
2010. 5. 10	집합투자기구 종류C-y 추가 및 투자대상(장내파생상품) 제외
2010. 8. 30	환매 정기지급금 추가
2010. 9. 6	환매 정기지급금 보완
2012. 4. 16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정정
2012. 6. 7	상호변경(홍국투자신탁운용 → 홍국자산운용)
2012.7.10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홍국알토란공모주증권투자신탁→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
2012.10.17	집합투자기구 종류C-w 항목추가(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 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2013.3.28	채권혼합 일반형 펀드에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013.4.29	클래스 C-p 추가
2014.1.22	소득세법 개정안 반영
2014.2.14	클래스 S 수익증권 및 클래스 S-P 수익증권 신설
2014.3.3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전성문→장현진)

3.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홍국생명빌딩 3층) (Tel 2122-2800, www.hkfund.co.kr)
--	---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2014.3.12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장현진 (1967)	책임운용 전문인력	주식운용 본부장	24개	1,110억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농업경제학과 - 94.08 ~ 98.07 : 한국산업증권 조사부 - 99.12 ~ 01.12 : ING Barings 리서치팀 - 01.12 ~ 08.12 : 튜브투자자문 리서치팀 - 09.02 ~ 13.11 : 하나UBS자산 주식운용본부 - 14.03 ~ 현재 : 흥국자산 주식운용본부
성일환 (1969)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채권운용 본부장	50개	49,519억	- 서강대 경제학과 - 93.12~00.02 : 동부증권 채권팀 - 00.02~01.04 : 동부투신 채권운용팀 - 01.06~02.12 : 서울투신 채권운용팀 - 03.01~04.07 : 유리자산 채권운용팀 - 04.07~11.03 : 동부자산 채권운용본부 - 11.04~현재 : 흥국자산 채권운용본부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 및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0.3억원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10.10.07. 주식운용본부장 이동근(1968)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1.12.07 말소
- 2011.04.08. 채권운용본부장 한성조(196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말소
- 2011.04.13. 채권운용본부장 성일환(196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1.12.08. 주식운용본부장 최창훈(1971)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2.02.29 말소
- 2012.03.01. 주식운용본부 팀장 이태진(1971)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2.08.09말소
- 2013.08.09. 주식운용본부장 전성문(1972)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4.03.31 말소
- 2014.03.31. 주식운용본부장 장현진(1967)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책임운용전문인력과 같음

6.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혼합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 %)			
종류 A 1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4)	2009-7-3	선취판매수수료가징 구되는 수익증권	납입 금액의 0.3%	-		0.3500	0.9000	0.0230	0.0170
종류 C 1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5)	2009-6-29	제한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li> <li>•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li> </ul>	0.3500	0.9500	0.0230	0.0170
종류 C 2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6)	2010-7-1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 상인 수익자	-	-		0.3500	0.8500	0.0230	0.0170
종류 C 3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7)	2011-7-4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 상인 수익자	-	-		0.3500	0.7600	0.0230	0.0170
종류 C 4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8)	2012-7-2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 상인 수익자	-	-		0.3500	0.6800	0.0230	0.0170
종류 C - i 수익증권 (펀드코드: 1 5 0 5 4)	2009-7-10	10억 이상 투자개인 20억 이상 투자법인	-	-		0.3500	0.6000	0.0230	0.0170
종류 C - e 수익증권 (펀드코드: 9 5 1 1 9)	2009-7-1	온라인 가입자	-	-		0.3500	0.6640	0.0230	0.0170

종류 C-p 수익증권 (펀드코드: A1194)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0.3500	0.8000	0.0230	0.0170
종류 C-w 수익증권 (펀드코드: 19922)	2010-3-12	일임형종합관리계, 좌, 금전신탁계좌,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 제3호에 따른 전문 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 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미 만 : 이익금 의 70%</li> <li>• 30일 이 상 90일 미 만 : 이익금 의 50%</li> </ul>	0.3500	0.0000	0.0230	0.0170
종류 C-y 수익증권 (펀드코드: 27383)	미설정	변액보험	-	-		0.3500	0.0100	0.0230	0.0170
종류 S 수익증권 (펀드코드: A0981)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 자 전용으로서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 되는 집합투자증권 에 가입하는 투자자	-	3년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이내		0.3500	0.2500	0.0230	0.0170
종류 S-p 수익증권 (펀드코드: A0982)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 자 전용이며, 소득세 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를 통하 여 가입할 수 있으 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집합투 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	0.3500	0.2000	0.0230	0.0170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등 적용된 판매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및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0	[ ]
30		100%이하
[ ]		
30	[ ]	100%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채권 90%이하, 주식 30%이하 투자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90%이하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 추구
	비교지수	$(0.3 * [KOSPI]) + (0.55 * [KOBI120]) + (0.15 * [CD금리])$
흥국멀티플레이30증권모투자신탁 [채권혼합]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에의 투자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공모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에 투자 할 계획임. 특히 공모주 투자는 기업탐방, 외부 리서치 자료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성 및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li> <li>-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 이상) 등에 투자</li> <li>-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 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음</li> </ul>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3년 3월 1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3월 28일 설정되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I120]) + (0.15 * [CD금리])$

8.

가. 투자대상

	( )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3) 유동성자산	<input type="checkbox"/>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채 권	9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 식	30% 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등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어 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집합투자증권등	2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환 매 조 건 부 매 도	증권총액의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증 권 의 대 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증 권 의 차 입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 주식, 어음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채권, 주식, 어음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② 투자신탁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li> <li>-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li> </ul>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해관계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ol> </li> </ul>
----------	--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 일 종 목 투 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li> <li>-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li> </ul>	최초설 정일로 부터1 개월간
동 일 법 인 투 자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종목의 투자 및 동일법인의 투자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② 투자신탁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text{ 금리}])$

[홍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전략]

□ 주식에의 투자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는 기업탐방, 외부 리서치 자료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성 및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기업에 대한 전문적 가치분석 및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투자판단</li> <li>- 공모주 투자는 발행시장의 특성(Capital Gain)으로 약세장에서도 수익 발생 가능</li> <li>- 펀드 투자만으로 IPO 시장에 직접 참여한 것 같은 기회 제공</li> </ul>
Event Driv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 매매 : 대주주가 대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할인하여 주식을 매수</li> <li>- 밸류에이션 매매 : 기업이 루머 등으로 기업가치가 단기에 크게 훼손되었거나 적정 기업가치와 현재 기업가치의 밸류에이션 갭이 클 경우 대상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 회복 시 차익 실현</li> </ul>

※ 대량 매매 전략 : 대주주가 대규모의 주식을 팔고자 할 경우 시장에서의 시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전략

※ 밸류에이션 매매 전략 : 기업 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루머로 인해 단기간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을 때, 적정 기업가치와 현재 기업가치의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졌을 경우 대상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 회복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 이상)등에 투자운용할 계획입니다.  
- 편입자산 듀레이션을 1년~1.5년 수준으로 운용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quad ])$$

- ※ KOSPI지수 :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입니다.
- ※ KOB120 지수 : KIS 채권평가에서 공시하는 국내 채권시장의 채권운용 듀레이션이 1년이 되도록 종합채권지수를 재구성한 총수익 지수(Total Return Index)입니다.
- ※ CD 금리 :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정기예금 금리로서 통상 91물(3개월)을 말합니다.
- ※ 지수 선정사유 : KOSPI 지수는 국내증권시장을 KOB120과 CD지수는 듀레이션 1년 수준의 국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권 및 채권과의 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형)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 교 지 수 와 수 익 률 괴 리 가 능 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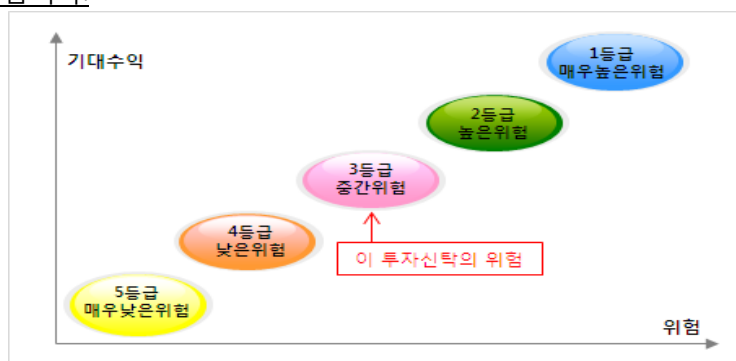
국 가 위 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유 동 성 위 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 자 산 가 치 변 동 위 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 매 연 기 위 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 자 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 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 합 투 자 기 구 해 지 의 위 험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에 투자하는 증권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5 3 에 해당되는 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홍국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등)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초과 60%미만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40%이하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홍국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투자계약증권, 상품(Commodity), REITs,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3) "중위험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 이하), 후순위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4) "저위험자산"이란 회사채(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5) 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편입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성격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11. 가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A-1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1 :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2 :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 종류 C-3 :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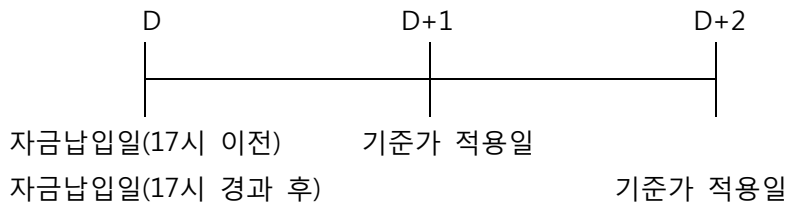


- 종류 C-4 :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 종류 C-i: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10억 이상 투자개인, 20억 이상 투자법인
- 종류 C-e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종류 C-w : 일임형종합관리계좌, 금전신탁계좌,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 종류 C-y : 변액보험
-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 5 ] 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_\_\_\_\_ 2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17 [ 5 ] 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_\_\_\_\_ 3 (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 ※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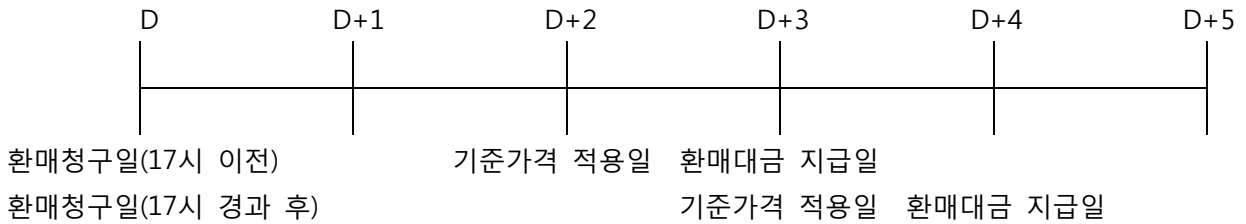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 [ 5 ] 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_\_\_\_\_ 3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_\_\_\_\_ 4 (D+3)에 환매대금 지급

17 [ 5 ] 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5 (D+4)에 환매대금 지급



- ※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4)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A-1,     C-1,     C-2,     C-3,     C-4,     C-i,     C-e,     C-w,     C-y,  
       S           :  
       가. 30       :       70%  
       . 30        90       :       50%
2.     C-p,     S-p,            :

###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

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6) 일부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7) 정기지급금

① 판매회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이하 "수시환매"라 한다.)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환매업무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릅니다.

② 수익자는 지급주기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여, 정기지급금액을 보유하는 종류 수익증권별 순자산가치(종류별 수익증권 보유좌수 X 종류별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월0.7% 이하가 되도록 판매회사와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회사에 정기지급금을 수령한다는 뜻을 밝힌 수익자는 정기지급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의 전전전 영업일에 정기지급금에 상당하는 보유 수익증권좌수에 대하여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 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정기지급금 지급일의 지정, 지급일 및 지급금액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투자신탁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⑤ 집합투자규약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 조 정기지급금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⑥ 집합투자규약 제41조(환매수수료)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지급금에 대하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다. 전환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클래스에 한합니다.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2)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5) 신탁계약서 제41조(환매수수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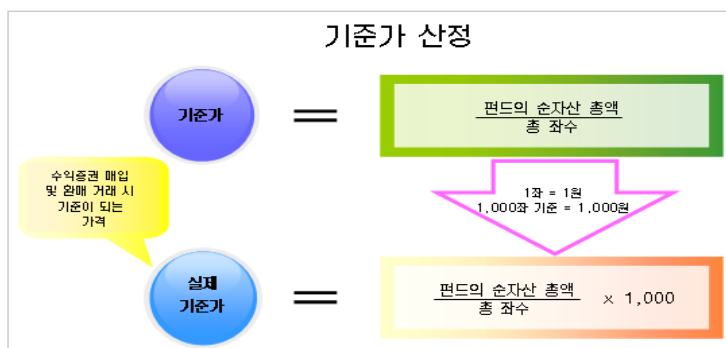
- ① 1)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2. 가 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물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등록주식	
비상장·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 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종류A-1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	-	○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
종류C-1	제한없음	-	-		-
종류C-2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		-
종류C-3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		-
종류C-4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		-
종류Ci	10억 이상 투자개인, 20억 이상 투자법인	-	-		-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	-		-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종류C-w	일임형종합관리계좌, 금전신탁계좌,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	-	○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
종류C-y	변액보험	-	-		-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에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 %)

	( )												
	A-1	C-1	C-2	C-3	C-4	C-i	C-e	C-p	C-w	C-y	S	S-p	
집합투자업자보수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000	0.9500	0.8500	0.7600	0.6800	0.6000	0.6640	0.8000	0.0000	0.0100	0.2500	0.2000	
신탁업자 보수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기타비용	0.0024	0.0024	0.0023	0.0024	0.0023	0.0023	0.0016	0.0109	0.0006	0.0200	0.0016	0.0109	발생시
총보수·비용	1.2924	1.3424	1.2423	1.1524	1.0723	0.9923	1.0556	1.2009	0.3906	0.4200	0.6416	0.6009	-
합성 총보수·비용 (실제 운용되는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클래스 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014	1.3497	1.2500	1.1636	1.0779	1.0019	1.0655	1.2009	0.3926	0.4200	0.6416	0.6009	-
증권거래 비용	0.0249	0.0253	0.0228	0.0245	0.0275	0.0248	0.0252	0.0472	0.0047	0.0500	0.0252	0.0472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6.29 ~ 2013.06.28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와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6.29 ~ 2013.06.28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이 통합펀드(실제 운용 되는 펀드)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통합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가	1	3	5	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A-1	30	132	412	713	1,567
	종류 C	-	138	428	740	1,623
	종류 C-i	-	102	317	551	1,220
	종류C-e	-	108	337	585	1,294
	종류C-p	-	120	374	647	1,424
	종류C-w	-	40	126	219	494
	종류C-y	-	42	132	230	518
	종류S	-	64	446	720	1,500
	종류S-p	-	60	442	716	1,496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류 C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년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흥국재형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o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	
집합투자업자보수	0.210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00	
신탁회사 보수	0.02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7	
기타비용	0.004	사유 발생시
총 보수 비용(TER)	0.754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0.754	-
증권거래비용	0.642	사유 발생시

14.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비율} = \text{환급비율} \times \text{1)}$$

주1) 환급비율:(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 15.4%( ),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C-p, S-p 가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가	없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가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기( 2013.06.29 - 2013.12.28 )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4기( 2012.06.29 - 2013.06.28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 2011.06.29 - 2012.06.28 )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5	4	3
	( 2013.12.28 )	( 2013.06.28 )	( 2012.06.28 )
운용자산	40,323,752,449	52,329,786,398	28,877,214,689
증권	40,313,911,621	52,314,535,040	28,699,921,433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840,828	15,251,358	177,293,2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4,084,813	319,396,597	1,075,461,113
자산총계	40,337,837,262	52,649,182,995	29,952,675,80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4,185,083	326,931,403	6,407,871
부채총계	14,185,083	326,931,403	6,407,871
원본	39,572,414,766	49,932,698,050	28,210,095,505
수익조정금	-125,137,812	897,904,128	-834,353,016
이익잉여금	876,375,225	1,491,649,414	2,570,525,442
자본총계	40,323,652,179	52,322,251,592	29,946,267,931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

	5	4	3
	( 2013.06.29 - 2013.12.28 )	( 2012.06.29 - 2013.06.28 )	( 2011.06.29 - 2012.06.28 )
운용수익	876,545,027	1,493,927,984	2,574,067,612
이자수익	4,532,598	1,058,981,382	1,800,871,753
배당수익	0	5,980,000	17,447,625
매매/평가수익(손)	872,012,429	428,966,602	755,748,23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69,802	2,278,570	3,542,170
당기순이익	876,375,225	1,491,649,414	2,570,525,442
매매회전율	0.00	364.80	797.26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 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대 차 대 조 표</b>						
투자신탁명 : <b>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b>				[단위: 원]		
과 목	제5기(2013.12.28)		제4기(2013.06.28)		제3기(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자 산</b>						
현금및예치금		9,840,828	15,251,358	15,251,358	1,931,856	177,293,256
1. 현금및현금성자산	9,840,828		15,251,358		1,931,856	177,293,25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388,250,310	384,380,615	384,380,615	2,193,540,000	4,286,254,424
1. 풀론	388,250,310		384,380,615		2,193,540,000	4,286,254,424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39,925,661,311	51,930,154,425	51,930,154,425	1,074,834,080	24,413,667,009
1. 지분증권					1,074,834,080	
2. 채무증권					23,338,832,929	
3. 수익증권	39,925,661,311		51,930,154,42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0	0
1. 파생상품		0	0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0	0
1. 건물		0	0	0	0	0
2. 토지		0	0	0	0	0
3. 농산물		0	0	0	0	0
4. 축산물		0	0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0	0
1. 임차권		0	0	0	0	0
2. 전세권		0	0	0	0	0
기 타 자 산		14,084,813	319,396,597	319,396,597	1,075,461,113	1,075,461,11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77,848		40,759	40,759	1,075,461,113	1,075,461,11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4,006,965		319,355,838	319,355,838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40,337,837,262</b>	<b>52,649,182,995</b>	<b>52,649,182,995</b>	<b>29,952,675,802</b>	<b>29,952,675,802</b>
<b>운 용 부 채</b>						
1. 옵션매도		0	0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4,185,083	326,931,403	326,931,403	4,182,000	6,407,87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182,000	6,407,871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4,006,965		325,873,304	325,873,304	503,310	503,310
4. 수수료미지급금	178,118		1,058,099	1,058,099	1,722,561	1,722,561
5. 기타미지급금			0	0	0	0
6. 기타부채					0	0
<b>부 채 총 계</b>		<b>14,185,083</b>	<b>326,931,403</b>	<b>326,931,403</b>	<b>6,407,871</b>	<b>6,407,871</b>
<b>자 본</b>						
1. 원 본	39,572,414,766		49,932,698,050	49,932,698,050	28,210,095,505	28,210,095,50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751,237,413		2,389,553,542	2,389,553,542	1,736,172,426	1,736,172,426
(발행좌수 당기: 39,572,414,766 좌 전기: 49,932,698,050 좌 (발행좌수 당기: 39,572,414,766 좌 전기: 49,932,698,050 좌) (기준가격 당기: 1,018.98 원 전기: 1,000.00 원 (기준가격 당기: 1,018.98 원 전기: 1,000.00 원))		751,237,413				
(발행좌수 당기: 39,572,414,766 좌 전기: 49,932,698,050 좌) (기준가격 당기: 1,018.98 원 전기: 1,000.00 원))			876,375,225	1,491,649,414	2,570,525,442	2,570,525,442
(발행좌수 당기: 39,572,414,766 좌 전기: 49,932,698,050 좌) (기준가격 당기: 1,018.98 원 전기: 1,000.00 원))			-125,137,812	897,904,128	-834,353,016	-834,353,016
<b>자 본 총 계</b>		<b>40,323,652,179</b>	<b>52,322,251,592</b>	<b>52,322,251,592</b>	<b>29,946,267,931</b>	<b>29,946,267,931</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40,337,837,262</b>	<b>52,649,182,995</b>	<b>52,649,182,995</b>	<b>29,952,675,802</b>	<b>29,952,675,802</b>

##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1**

[단위: 원]

과 목	제5기 (2013. 12. 28)		제4기 (2013. 06. 28)		제3기 (2012. 06. 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14,326,230,246		21,028,083,623		3,784,246,942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4,326,230,246		21,028,083,623		3,784,246,942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12,159,284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2,159,284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14,338,389,530</b>		<b>21,028,083,623</b>		<b>3,784,246,942</b>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57,901,727		61,556,619		9,377,33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2,119,752				9,377,336	
4. 수수료미지급금	45,781,975		61,556,619		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57,901,727</b>		<b>61,556,619</b>		<b>9,377,336</b>
<b>자 본</b>						
1. 원 본	14,108,601,955		20,274,928,245		3,603,569,49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171,885,848		691,598,759		171,300,116	
(발행좌수 당기: 14,108,601,955 좌						
전기: 20,274,928,245 좌						
미익잉여금		217,542,183		93,810,603		161,533,696
수익조정금		-45,656,335		597,788,156		9,766,420
전전기: 3,603,569,490 좌)						
(기준가격 당기: 1,012.18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14,280,487,803</b>		<b>20,966,527,004</b>		<b>3,774,869,606</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14,338,389,530</b>		<b>21,028,083,623</b>		<b>3,784,246,942</b>

##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e**

[단위: 원]

과 목	제5기 (2013. 12. 28)		제4기 (2013. 06. 28)		제3기 (2012. 06. 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212,071,634		206,124,615		301,553,843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12,071,634		206,124,615		301,553,843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2,330,362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330,362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212,071,634</b>		<b>208,454,977</b>		<b>301,553,843</b>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547,817		2,857,219		781,98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2,325,427			
3. 해지미지급금			531,792		781,980	
4. 수수료미지급금	547,817		0		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547,817</b>		<b>2,857,219</b>		<b>781,980</b>
<b>자 본</b>						
1. 원 본	208,668,041		198,157,121		286,321,48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2,855,776		7,440,637		14,450,374	
(발행좌수 당기: 208,668,041 좌						
미익잉여금		2,849,282		10,677,004		25,549,301
전기: 198,157,121 좌				-3,236,367		-11,098,927
수익조정금		6,494				
전전기: 286,321,489 좌)						
(기준가격 당기: 1,013.69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211,523,817</b>		<b>205,597,758</b>		<b>300,771,863</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212,071,634</b>		<b>208,454,977</b>		<b>301,553,843</b>

##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1**

[단위: 원]

과 목	제5기 (2013. 12. 28)		제4기 (2013. 06. 28)		제3기 (2012. 06. 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10,287,577,907		14,791,049,234		8,540,383,817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0,287,577,907		14,791,049,234		8,540,383,817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1,215,918		322,908,229		503,31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1,215,918		322,908,229		503,310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10,288,793,825</b>		<b>15,113,957,463</b>		<b>8,540,887,127</b>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34,063,307		368,634,656		26,110,47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212,139		322,215,541		501,708	
4. 수수료미지급금	32,851,168		46,419,115		25,608,763	
5. 기타미지급금			0		0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34,063,307</b>		<b>368,634,656</b>		<b>26,110,471</b>
<b>자 본</b>						
1. 원 본	10,128,788,910		14,253,899,805		8,124,975,48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125,941,608		491,423,002		389,801,176	
(발행좌수 당기: 10,128,788,910 좌 전기: 14,253,899,805 좌 전전기: 8,124,975,480 좌)						
(기준가격 당기: 1,012.43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10,254,730,518</b>		<b>14,745,322,807</b>		<b>8,514,776,656</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10,288,793,825</b>		<b>15,113,957,463</b>		<b>8,540,887,127</b>

##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i**

[단위: 원]

과 목	제5기 (2013. 12. 28)		제4기 (2013. 06. 28)		제3기 (2012. 06. 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2,259,034,961		2,228,056,650		2,147,346,557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259,034,961		2,228,056,650		2,147,346,557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2,259,034,961</b>		<b>2,228,056,650</b>		<b>2,147,346,557</b>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5,553,972		5,571,071		5,329,669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553,972		5,571,071		5,329,669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5,553,972</b>		<b>5,571,071</b>		<b>5,329,669</b>
<b>자 본</b>						
1. 원 본	2,222,477,533		2,142,016,888		2,037,875,14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31,003,456		80,468,691		104,141,739	
(발행좌수 당기: 2,222,477,533 좌						
미익잉여금		30,995,287		80,468,691		104,141,739
수익조정금		8,169		0		0
전전기: 2,037,875,149 좌)						
(기준가격 당기: 1,013.95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2,253,480,989</b>		<b>2,222,485,579</b>		<b>2,142,016,888</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2,259,034,961</b>		<b>2,228,056,650</b>		<b>2,147,346,557</b>

##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

[단위 : 원]

과 목	제5기(2013.12.28)		제4기(2013.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1,074,696,308		1,848,188,332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074,696,308		1,848,188,332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1,074,696,308		1,848,188,332		0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1,041,120		1,734,367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1,041,120		1,734,367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1,041,120		1,734,367		0
<b>자 본</b>						
1. 원 본	1,055,698,130		1,817,525,63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일여금	17,957,058		28,928,326			
(발행좌수 당기: 1,055,698,130 좌						
미익일여금		25,144,208		19,365,136		0
전기: 1,817,525,639 좌						
수익조정금		-7,187,150		9,563,190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17.01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원)						
<b>자 본 총 계</b>		1,073,655,188		1,846,453,965		0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1,074,696,308		1,848,188,332		0



##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2**

[단위: 원]

과 목	제5기 (2013. 12. 28)		제3기 (2013. 06. 28)		제2기 (2012. 06. 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문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3,606,864,549		2,260,520,284		150,335,373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606,864,549		2,260,520,284		150,335,373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634,713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634,713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3,606,864,549		2,261,154,997		150,335,373
<b>부 채</b>						
<b>문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11,085,745		7,678,220		506,52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632,708			
3. 해지미지급금			7,045,512		506,523	
4. 수수료미지급금	11,085,745		0		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11,085,745		7,678,220		506,523
<b>자 본</b>						
1. 원 본	3,550,733,759		2,177,279,570		142,897,92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45,045,045		76,197,207		6,930,923	
(발행좌수 당기: 3,550,733,759 좌 전기: 2,177,279,570 좌 전전기: 142,897,927 좌)		32,681,228		12,713,520		1,094,408,114
(기준가격 당기: 1,012.69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12,363,817		63,483,687		-1,087,477,191
<b>자 본 총 계</b>		3,595,778,804		2,253,476,777		149,828,850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3,606,864,549		2,261,154,997		150,335,373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3**

[단위:원]

과 목	제5기 (2013. 12. 28)		제3기 (2013. 06. 28)		제2기 (2012. 06. 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212,793,707		126,753,574		15,022,401,399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12,793,707		126,753,574		15,022,401,399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631,763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631,763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213,425,470		126,753,574		15,022,401,399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1,242,581		367,317		39,737,657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629,997				39,737,657	
4. 수수료미지급금	612,584		367,317		0	
5. 기타미지급금			0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1,242,581		367,317		39,737,657
<b>자 본</b>						
1. 원 본	209,429,120		122,003,982		14,295,108,80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753,769		4,382,275		687,554,936	
(발행좌수 당기: 209,429,120 좌						
미익잉여금		2,417,876		524,147,144		94,831,596
전기: 122,003,982 좌				-519,764,869		592,723,340
수익조정금		335,893				
전전기: 14,295,108,806 좌)						
(기준가격 당기: 1,013.15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212,182,889		126,386,257		14,982,663,742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213,425,470		126,753,574		15,022,401,399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4**

[단위:원]

과 목	제5기(2013.12.28)		제4기(2013.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0		0		0
1. 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8,344,382,867		9,833,475,280		0
1. 자본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8,344,382,867		9,833,475,280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8,344,382,867		9,833,475,280		0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22,169,397		26,961,114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22,169,397		26,961,114		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22,169,397		26,961,114		0
<b>자 본</b>						
1. 원 본	8,210,993,469		9,454,498,19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11,220,001		352,015,973			
(발행좌수 당기: 8,210,993,469) <b>좌</b>						
(발행좌수 전기: 9,454,498,193) <b>좌</b>						
(이월잉여금 당기: 1,013.55) <b>원</b>						
(이월잉여금 전기: 1,000.00) <b>원</b>						
(이익잉여금 당기: 126,492,936) <b>좌</b>						
(이익잉여금 전기: -15,272,935) <b>좌</b>						
(수익조정금 당기: -6,902,307) <b>원</b>						
(수익조정금 전기: 358,918,280) <b>원</b>						
<b>자 본 총 계</b>		8,322,213,470		9,806,514,166		0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8,344,382,867		9,833,475,280		0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과 목	제5기 (2013.06.29-2013.12.28)		제4기 (2012.06.29-2013.06.28)		제3기 (2011.06.29-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4,532,598		1,064,961,382		1,818,319,378
1. 이 자 수 익	4,532,598		1,058,981,382		1,800,871,753	
2. 배당금수익			5,980,000		17,447,625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872,157,011		920,831,501		2,221,620,054
1. 지분증권매매차익			411,843,455		1,709,534,80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58,384,238		462,389,108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711,259,239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37,147,340		48,214,904	
7. 기타거래차익	160,897,772		213,456,468		1,481,239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144,582		491,864,899		1,465,871,820
1. 지분증권매매차손			45,133,086		414,062,60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10,152,134		1,039,795,053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49,512		6,028,024		12,014,162	
8. 기타거래손실	95,070		230,551,655			
<b>운 용 비 용</b>		169,802		2,278,570		3,542,17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69,802		2,278,570		3,542,170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876,375,225		1,491,649,414		2,570,525,442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22146114		0.029873199		0.091120764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e**

[단위 : 원]

과 목	제5기 (2013.06.29-2013.12.28)		제4기 (2012.06.29-2013.06.28)		제3기 (2011.06.29-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9,784		175,835		14,023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9,784		175,835		14,023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3,952,507		14,002,228		30,658,267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3,707,243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14,002,228		30,658,267	
7. 기타거래차익	245,264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77		735,670		1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77		735,670		1	
8. 기타거래손실						
<b>운 용 비 용</b>		1,112,932		2,765,389		5,122,988
1. 운용수수료	368,605		916,271		1,697,444	
2. 판매수수료	700,419		1,740,252		3,221,664	
3. 수탁수수료	24,205		60,161		111,44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9,703		48,705		92,435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849,282		10,677,004		25,549,301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13654616		0.053881505		0.089232915

##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1

[단위: 원]

과목	제5기(2013.06.29-2013.12.28)		제4기(2012.06.29-2013.06.28)		제3기(2011.06.29-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용수익</b>		11,469		58,487		148,233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1,469		58,487		148,233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37,046,465		450,866,276		736,301,49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90,432,692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46,613,773		450,866,276		736,301,49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971		11,948		37,139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4,971		11,948		37,139	
<b>운용비용</b>		80,233,600		142,698,538		151,039,077
1. 운용수수료	21,726,724		38,643,387		40,901,778	
2. 판매수수료	55,870,570		99,372,863		105,179,734	
3. 수탁수수료	1,427,756		2,539,421		2,687,79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208,550		2,142,867		2,269,774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56,809,363		308,214,277		585,373,515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15481551		0.021623154		0.072046189

##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i

[단위: 원]

과목	제5기(2013.06.29-2013.12.28)		제4기(2012.06.29-2013.06.28)		제3기(2011.06.29-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용수익</b>		0		0		0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2,135,832		102,366,485		125,027,62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42,058,774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7,058		102,366,485		125,027,62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24		0		2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824				2	
<b>운용비용</b>		11,139,721		21,897,794		20,885,879
1. 운용수수료	3,928,627		7,723,652		7,367,149	
2. 판매수수료	6,734,851		13,240,686		12,629,522	
3. 수탁수수료	258,077		507,378		483,96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18,166		426,078		405,246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30,995,287		80,468,691		104,141,739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13946277		0.037566786		0.051103101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

[단위 : 원]

과 목	제 5기 (2013.06.29-2013.12.28)		제 4기 (2010.10.08-2013.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문 용 수 익</b>						
1. 투자수익		24,994		455,04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24,994		455,040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8,010,324		30,137,20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9,816,641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8,193,683		30,137,20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1,728		7,210,476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1,728		7,210,476			
<b>문 용 비 용</b>		2,869,382		4,016,628		0
1. 운용수수료	2,559,841		3,583,139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168,142		235,34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41,399		198,144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5,144,208		19,365,136		0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23817612		0.01065467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2**

[단위 : 원]

과 목	제 5기 (2013.06.29-2013.12.28)		제 3기 (2012.06.29-2013.06.28)		제 2기 (2011.06.29-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문 용 수 익</b>						
1. 투자수익		0		0		139,619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39,619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9,566,498		36,038,575		1,320,546,069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46,964,661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601,837		36,038,575		1,320,546,06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235		8,609,055		432,43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235		8,609,055		432,433	
<b>문 용 비 용</b>		16,882,035		14,716,000		225,845,141
1. 운용수수료	4,755,568		4,145,957		63,620,945	
2. 판매수수료	11,550,136		10,069,669		154,509,862	
3. 수탁수수료	312,462		272,316		4,180,710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63,869		228,058		3,533,624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32,681,228		12,713,520		1,094,408,114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09204077		0.005839177		7.658670332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3**

[단위 : 원]

과 목	제5기 (2013.06.29-2013.12.28)		제3기 (2012.06.29-2013.06.28)		제2기 (2011.07.04-2012.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1. 투자수익		0		1,814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814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513,633		641,003,782		192,147,883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929,772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641,003,782		192,147,883	
7. 기타거래차익	583,86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88		70,981		40,625,559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70,981		40,625,559	
8. 기타거래손실	288					
<b>운 용 비 용</b>		1,095,469		116,787,471		56,690,728
1. 운용수수료	332,913		35,468,948		17,218,086	
2. 판매수수료	723,111		77,020,024		37,368,495	
3. 수탁수수료	21,819		2,330,733		1,131,33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7,626		1,967,766		952,815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417,876		524,147,144		94,831,596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1154508		4.295147842		0.006633849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4**

[단위 : 원]

과 목	제5기 (2013.06.29-2013.12.28)		제4기 (2012.07.02-2013.06.28)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1. 투자수익		0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76,726,991		56,229,351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54,600,943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56,229,351			
7. 기타거래차익	22,126,04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375		33,619,263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33,619,263			
8. 기타거래손실	7,375					
<b>운 용 비 용</b>		50,226,680		29,512,395		0
1. 운용수수료	16,391,419		9,632,356			
2. 판매수수료	31,846,888		18,714,815			
3. 수탁수수료	1,077,107		632,834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11,266		532,390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26,492,936		-6,902,307		0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015405314		-0.000730055		

2.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499	499	72	73	176	177	396	403
2012.06.29 - 2013.06.28	282	282	519	540	302	313	499	523
2011.06.29 - 2012.06.28	692	692	295	306	705	724	282	299

(주1)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690,000,063좌/1,690,000,063원

(주2)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330,612,504좌/1,330,612,504원

(주3)2011.06.29 - 2012.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968,253,838좌/968,253,838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1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203	203	16	16	78	78	141	143
2012.06.29 - 2013.06.28	36	36	233	242	67	69	203	210
2011.06.29 - 2012.06.28	58	58	52	54	74	75	36	38

(주1)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90,576,287좌/690,632,830원

(주2)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66,587,910좌/166,587,910원

(주3)2011.06.29 - 2012.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77,457,951좌/77,457,951원

(주4)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683,763좌/6,684,415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e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2	2	0	0	0	0	2	2
2012.06.29 - 2013.06.28	3	3	6	6	7	7	2	2
2011.06.29 - 2012.06.28	7	7	0	1	4	5	3	3

(주1)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3,378,849좌/13,378,849원

(주2)2011.06.29 - 2012.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0,059,888좌/10,059,888원

(주3)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80,888,243좌/480,928,973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A-1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143	143	6	6	47	48	101	103
2012.06.29 - 2013.06.28	81	81	103	106	42	43	143	147
2011.06.29 - 2012.06.28	172	172	10	10	101	103	81	85



(주1)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79,710,927좌/379,710,927원

(주2)2011.06.29 - 2012.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39,823,647좌/239,823,647원

(주3)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80,460,645좌/80,468,814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i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21	21	1	1	0	0	22	23
2012.06.29 - 2013.06.28	20	20	1	1	0	0	21	22
2011.06.29 - 2012.06.28	20	20	0	0	0	0	20	21

(주1)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04,141,739좌/104,141,739원

(주2)2011.06.29 - 2012.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5,227,952좌/35,227,952원

(주3)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7,776,664좌/27,780,300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w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18	18	0	0	8	8	11	11
2012.06.29 - 2013.06.28	0	0	27	27	9	9	18	18

(주1)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7,534,940좌/67,540,849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2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22	22	18	18	4	4	36	36
2012.06.29 - 2013.06.28	1	1	29	30	8	9	22	23
2011.06.29 - 2012.06.28	442	442	23	24	464	475	1	1

(주1)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445,218좌/6,445,218원

(주2)2011.06.29 - 2012.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05,684,400좌/605,684,400원

(주3)2013.06.29 - 2013.12.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875,878좌/3,876,236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3

[단위:억좌, 억원]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1	1	2	2	1	1	2	2
2012.06.29 - 2013.06.28	143	143	12	9	154	156	1	1
2011.06.29 - 2012.06.28	0	0	191	198	48	49	143	150

(주1)2012.06.29 - 2013.06.28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60,347,861좌/660,347,861원

[단위:억좌, 억원]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자투자신탁[채권혼합]C-4

			( )					
	( )		( )		( )		( )	
2013.06.29 - 2013.12.28	95	95	5	5	17	17	82	83
2012.06.29 - 2013.06.28	0	0	98	102	3	3	95	98

3. (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1	2	3	5	
	12.12.29 ~13.12.28	11.12.29 ~13.12.28	10.12.29 ~13.12.28		09.06.29 ~13.12.28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81	4.71	4.45		5.00
비교지수	2.19	3.91	2.57		5.29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1	1.44	3.33	3.07		3.62
비교지수	2.19	3.91	2.57		5.29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e	1.76	3.66	3.38		3.96
비교지수	2.19	3.91	2.57		5.32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1	1.49	3.38	3.12		3.68
비교지수	2.19	3.91	2.57		5.21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i	1.80	3.69	3.42		3.99
비교지수	2.19	3.91	2.57		5.11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C-w	2.43	1.65	1.09		0.86
비교지수	2.19	1.69	1.13		0.89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2	1.54	3.43	3.17		3.17
비교지수	2.19	3.91	2.57		4.18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3	1.63	3.52			3.90
비교지수	2.19	3.91			2.04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4	1.71				3.41

비교지수	2.19				3.93
------	------	--	--	--	------

주 1)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120]) + (0.15 \* [CD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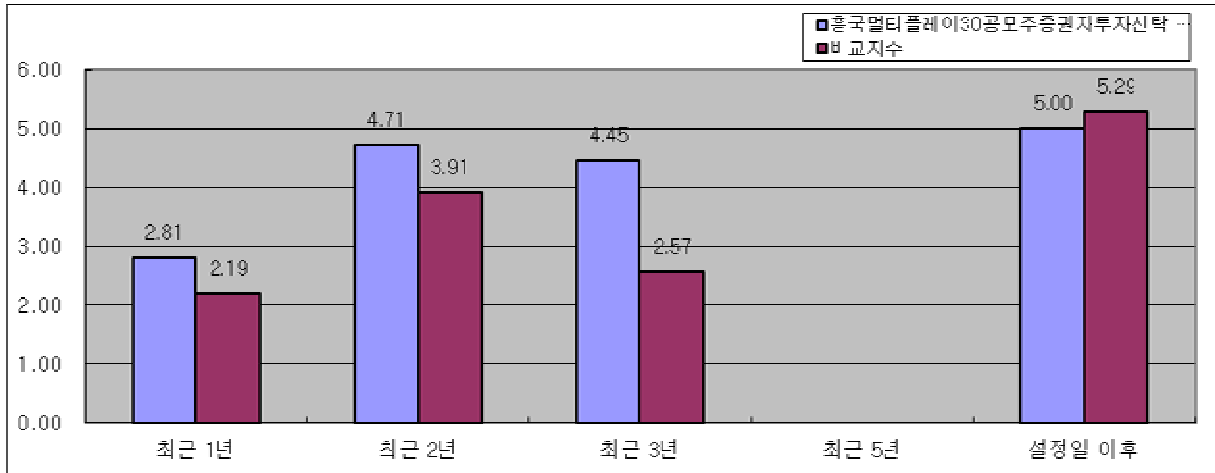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율입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자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1	2	3	4	5
	12.12.29 ~13.12.28	11.12.29 ~12.12.28	10.12.29 ~11.12.28	09.12.29 ~10.12.28	09.06.29 ~09.12.28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81	6.66	3.93	6.22	2.94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7.24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1	1.44	5.26	2.55	4.82	2.27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7.24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e	1.76	5.58	2.84	5.15	2.50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7.35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A-1	1.49	5.30	2.60	4.87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i	1.80	5.61	2.90	5.17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C-w	2.43	0.87	0.00	0.00	
비교지수	2.19	1.19	0.00	0.00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2	1.54	5.35	2.65	1.57	

비교지수	2.19	5.66	-0.07	6.95	
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3	1.63	5.44			
비교지수	2.19	5.66			
한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4	1.71	3.36			
비교지수	2.19	3.65			

주 1)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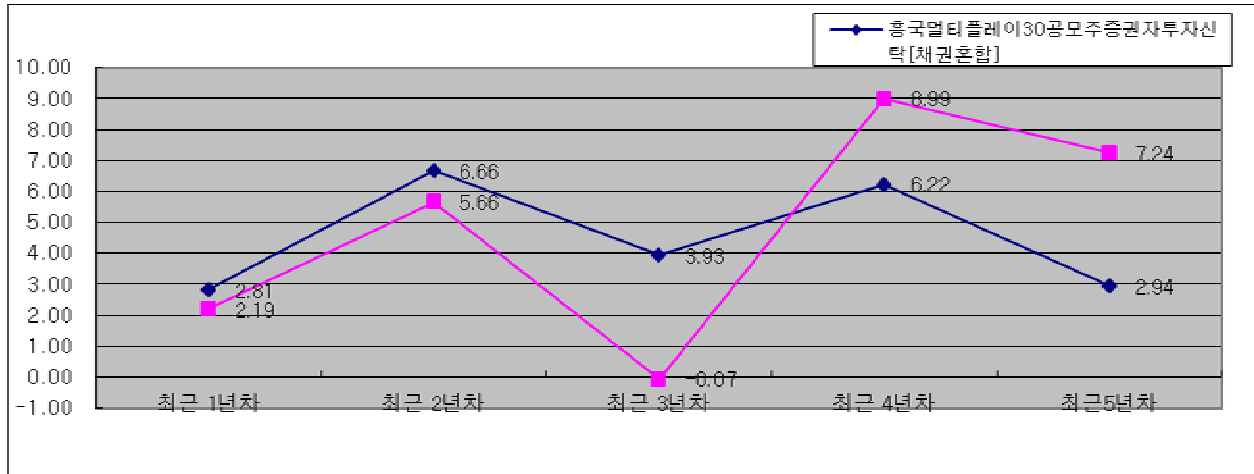
주 2)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률입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자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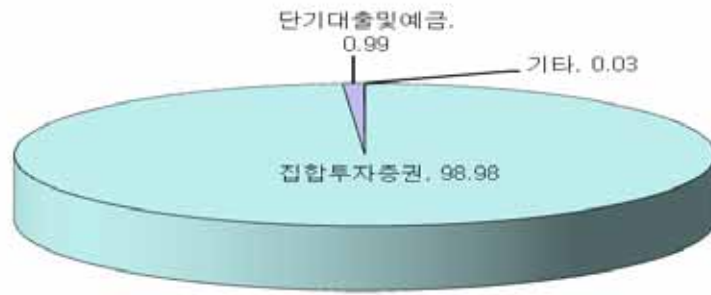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2013.12.28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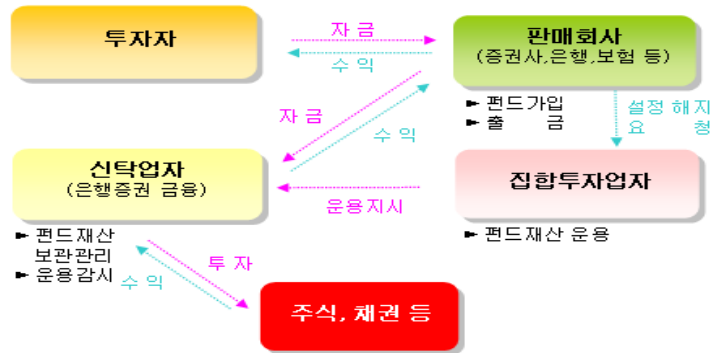
KRW	0	0	0	399	0	0	0	0	0	4	0	403
	(0.00)	(0.00)	(0.00)	(98.98)	(0.00)	(0.00)	(0.00)	(0.00)	(0.00)	(0.99)	(0.03)	(100.00)
합계	0	0	0	399	0	0	0	0	0	4	0	403
	(0.00)	(0.00)	(0.00)	(98.98)	(0.00)	(0.00)	(0.00)	(0.00)	(0.00)	(0.99)	(0.03)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여음 등 : CD 및 여음을 나타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가. 회사개요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흥국생명빌딩 3층) (연락처 : 02-2122-2800, www.hkfund.co.kr)
회사 연혁	-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 2000.06.19 자산운용업 허가 -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 2009.02.04 집합투자업 인가 - 2012.06.07 흥국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흥국증권(72.0%), 이호진(20.0%), 기타(8%)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13.3.31	'12.3.31		'13.3.31	'12.3.31
유동자산	20,007	17,353	영업수익	10,451	9,070
고정자산	3,849	3,801	영업비용	7,719	7,307
<u>자산총계</u>	<u>23,856</u>	<u>21,336</u>	영업이익	2,732	1,763
유동부채	1,071	618	영업외수익	2	6
고정부채	24	1	영업외비용	0	0
<u>부채총계</u>	<u>1,095</u>	<u>619</u>	경상이익	2,734	1,769
자본금	10,000	10,000	특별손익	0	0
이익잉여금	12,761	10,717	세전순이익	2,734	1,769
<u>자본총계</u>	<u>22,761</u>	<u>20,717</u>	당기순이익	2,044	1,237

라. 운용자산 규모

[ 2013.12.28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49	20,085	4,112	0	370	1,839	0	2,349	8,557	0	19,268	57,430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 회사의 개요

	(주)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번지 (Tel : 2002-1111)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hanabank.com">www.hanabank.com</a>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가. 회사의 개요

	신한아이타스(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www.shinhanaitas.com)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흥국자산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

가.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주)	KIS 채권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주)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7 유화증권빌딩 9층 (02-3770-0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02-721-5300)
( )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1.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및4)의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3.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게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레인보우 제1차(CP) 매도	196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세아특수강(CP) 매도	2,173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진성시티(CP) 매도	586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진성시티(CP) 매도	485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진성시티(CP) 매도	577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진성시티(CP) 매도	572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진성시티(CP) 매도	567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골드파워제이차(CP) 매도	435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트라이베카제이차(CP) 매도	1,256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골드파워제이차(CP) 매도	435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정찬네트웍스(CP) 매도	453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블리츠제사차(CP) 매도	964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LG상사 매도	496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LG패션 매도	277	기타
2013-03-28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	중국고섬 매도	11	기타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2012.8.31기준)

- 1)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2)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운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매매를 위탁할 수 있다.
- 5)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플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기업공개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_\_\_\_\_ ( )

( ) : 30 [ ]

- 1. : ? ( )
- 2. ( ) ?
- 3. ?
- 4. 가 , , ?
- 5. ?
- 6. 가 , ?
- 7. 가 가 ?

가 .



( : )-----( )----

\_\_\_\_\_ ( )

( ) : 30 [ ]

: ( )

1. ?	( )
2. ( ) ?	( )
3. ?	( )
4. 가 , , ?	( )
5. ?	( )
6. 가 ,	( )
7. 가 가 가 ?	( )

( )